

제6회 아동권리포럼

입양체제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일시 2023.12.6. (수) 10:00~12:2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지하1층)



주최·주관

국민의회 국회의원 김미애

보건복지부

아동이 행복한 세상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일시 2023.12.6. (수) 10:00~12:2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지하1층)



프로그램

	개회·국민의례
10:00 ~ 10:25 (개회식)	주요 내빈 소개
	환영사 김미애 국민의 힘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일 제1차관 (보건복지부)
	개회사 정익중 원장 (아동권리보장원)
	축사 기우종 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Christophe Bernasconi 사무총장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영상 축사
	사진촬영
	발표 세션
10:25 ~ 10:55 (주제 발표)	주제 1 정동혁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주제 2 이종혁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좌장) 박현선 교수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05 ~ 12:00 (사례발표)	사례 1 이해희 사무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례 2 장주섭 주무관 (법무부 이민통합과)
	사례 3 송현중 조사사무관 (서울가정법원)
	사례 4 김영희 원장 (현 굿프렌즈평생교육원, 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사례 5 장화정 본부장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12:00 ~ 12:20	질의응답
12:20	폐회

목 차

[환영사]

김미애 국민의 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
이기일 제1차관(보건복지부)	4

[개회사]

정익중 원장(아동권리보장원)	6
-----------------------	---

[축사]

기우종 실장(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8
Christophe Bernasconi 사무총장(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10

[주제발표]

1. 현재의 입양 절차와 개편에 따른 변화	15
정동혁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2. 국제입양법에 따른 가족 내 국제입양 절차 이행	37
이종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례발표]

1. 입양체계 개편과 향후계획	51
이해희 사무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한 「거주(F-2)」 자격	59
장주섭 주무관(법무부 이민통합과)	
3. 국제결혼 가정의 미성년자입양 허가 신청 사건 가사조사 사례	65
송현중 조사사무관(서울가정법원)	
4. 국제입양 절차에서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서비스	69
김영희 원장(현 굿프렌즈평생교육원, 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5.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내로의 입양부모교육	75
장화정 본부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환영사



김미애

국민의 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입양 법제가 전면 개편된 상황에서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을 주제로 제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준비해주신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님, 법원행정처 기우종 실장님,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 영상으로 인사를 전해주시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 Christophe Bernasconi(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 기준에 따라 입양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율하고, 헤이그협약 비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양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국외 모든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책임이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입양기관의 과도한 책임과 업무, 그로 인한 입양지연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면서 입양 현장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행 입양제도 개선은 물론 개편된 국내·외 입양절차,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 아동의 권리보장 등 여러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정동혁 부장판사님, 이종혁 교수님, 좌장을 맡아 주실 박현선 교수님을 비롯한 참석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랜 입양역사에 있어 올해는 매우 뜻깊은 한 해입니다.

지난 7월 18일, 입양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향후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함께 모인 이 자리가 더욱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포럼을 주최해주시고, 입양법이 통과될 수 있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입양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법원행정처 기우종 사법지원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포럼을 준비해주시고, 향후 입양체계 개편 시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 역할하실 아동권리 보장원의 정익중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입양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법원행정처 기우종 사법지원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포럼을 준비해주시고, 향후 입양체계 개편 시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 역할하실 아동권리 보장원의 정익중 원장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실 정동혁 서울가정법원 판사님, 이종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좌장으로 수고해주실 박현선 세종대학교 교수님, 또한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어주실 발표자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입양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가장 좋은 보호의 방법입니다. 아이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는 「국내입양 특별법」이 시행되어 입양 전반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됩니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할 것입니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입양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진행합니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그간 민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국제 재혼가정의 전혼자녀 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루지게 됩니다.

법 시행과 함께 2013년에 가입 서명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도 비준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새로운 입양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 헌신해 온 입양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므로 입양기관과 당사자인 입양가족, 입양인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국제입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동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사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정익중입니다.

입양법제 관련 아동권리포럼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함께 하고 계신
참석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아동권리포럼에 함께해주신 국회의원 김미애 의원님,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님, 법원행정처
기우종 사법지원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축하와 관심을 전달해주신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국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사무총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시는 정동혁 부장판사님, 이종혁 교수님, 좌장으로 참여해주시는 박현선
교수님, 그리고 사례발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 6월 30일, 우리나라 입양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률은 7월 18일 공포되어 2025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개정된 입양법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이행 법률안으로, 우리나라가 2013년 협약에 서명한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법원, 국회, 입양기관, 관련 단체, 입양인 당사자 단체 등이 수없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시행을 앞둔 입양법은 보호대상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의 국내·국제 입양절차에서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한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아동권리 보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행 국제입양 절차와 개편에 따른 변화와 특히,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과 관련한 사례를 공유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여러 의견을 귀담아듣고 10년 만에 통과된 입양법 제·개정안이 목적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입양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 설립을 추진하여 입양정보공개청구의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개편된 입양제도가 잘 정착되어 아동의 권리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기우종입니다.

먼저, 이 뜻깊은 주제로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김미애 의원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과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 포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입양특례법」이 전부 개정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입양체계에서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양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두 법률의 개정과 제정은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의 건강한 입양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및 가사조사관의 양육환경 조사 등 법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예정이므로,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은, 향후 입양절차 개선의 구체적 논의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썸록, 오늘의 논의가 우리 아이들의 힘찬 성장과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번 포럼에서 깊이 있는 발표를 준비해 주신 분들과,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심한 노고를 다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6회 아동권리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outh Korea Forum
Speech by SG Christophe Bernasconi
06 December 2023

Christophe Bernasconi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Dear colleagues at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Ladies and Gentlemen,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on this momentous occasion, the passing of the International Adoption Act, which implements the principles, guarantees and procedures set forth in the HCCH Convention of 1993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which we refer to as the 1993 Adoption Convention, or simply the Adoption Convention.

The 1993 Adoption Convention recognises that growing up in a family is of primary importance and is essential for the happiness and healthy development of a child. It also recognises that intercountry adoption may offer the advantage of a permanent family to a child for whom a suitable family cannot be found in their country of origin. By setting out clear procedures and prohibiting improper financial or other gains, the Adoption Convention provides greater security,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for all parties to the adoption, and tries to prevent illicit practices, including the abduction, the sale of, or traffic in children.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HCCH, I would like to commend all parties involved – the government, legislators, policymakers, and any other stakeholders – for their commitment in bringing this important implementation Law to frui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this Law, the Republic of Korea effectively expresses its aspiration to uphold the rights of children in need of an intercountry adop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involv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that eventually led to the Adoption Convention. While it was not a Member of the HCCH yet, the Republic of Korea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negotiations leading up to the Convention, sharing its broad experience with intercountry adoptions. I am sure the positive experience with these negotiations also prompted the Republic of Korea to become a Member of the HCCH in 1997. And then of course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the Adoption Convention in 2013. This new legislative achievement therefore marks another milestone in the Republic of Korea's path towards the ratification of the 1993 Adoption Convention, and its further implementation. I am very pleased to hear of the envisaged ratification of the Adoption Conven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ourse of 2025, and I am confident that thi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who are in need of an intercountry adoption.

We at the HCCH look forward to the envisaged ratification and stand ready to support the Republic of Korea in its path towards ratification,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1993 Adoption Convention, to ensure that intercountry adoptions only take place in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in need of an intercountry adoption, and with respect for their fundamental rights.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 once again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passing the Adoption Act.

축 사

Christophe Bernasconi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사무총장

존경하는 국회의원, 친애하는 정부·아동권리보장원 동료, 내외 귀빈 여러분,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헤이그 협약(이하, 1993 입양협약 또는 입양협약)'의 원칙, 약속, 절차를 이행하는 국제입양법이 통과된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1993 입양협약은 아동이 가정 내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국제입양은 출신 국가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을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 가정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양협약은 명확한 절차를 만들고,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득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입양 당사자에게 안전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을 제공하고 아동의 유괴, 매매 또는 인신매매를 포함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 사무총장으로서 정부, 국회의원, 정책입안자, 이해관계자 등 모든 관련자가 중요한 협약 이행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신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입양법의 제정을 통해 국제입양이 필요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의지를 효과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입양협약이 채택되는 과정의 시작부터 함께 했습니다. 당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은 국제입양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공유하며 협약이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협상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이 1997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2013년에 입양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입법 성과는 1993입양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향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2025년에 입양협약을 비준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쁘고, 이는 국제입양이 필요한 아동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성사무국은 대한민국의 비준을 기대하며, 국제입양이 필요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도록, 1993 입양협약의 비준, 이행 및 운영을 향한 대한민국의 행보에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양법 통과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입양 절차와 개편에 따른 변화

정동혁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입양사건의 종류

I. 입양특례법상 입양

- 국내입양
-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령,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II. 민법상 입양

- 미성년자 입양
- 친양자 입양
- 성년자 입양(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 피성년후견인 입양

입양특례법상 입양

I. 적용대상 및 관할 등

- 적용대상:** 요보호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18세 미만)]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아동**의 ① 국내입양[입양특례법 제11조], ②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입양특례법 제11조, 제18조], ③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입양특례법 제11조, 제19조]
- 국제재판관할(국외입양):** 대한민국 법원[국제사법 제2조, 58조, 입양특례법 제18조,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
- 토지관할:**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입양특례법 제18조,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
- 준거법:** 양친의 본국법[국제사법 제70조]
 - 국외입양 사건은 양친의 본국법 외에 입양특례법이 누적적으로 적용됨[국제사법 제20조, 제71조]
 - 입양에 관하여 입양특례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입양특례법 제42조]

II. 청구권자

- 국내입양:** 아동을 입양하려는 자
-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아동을 입양하려는 외국인과 당해 아동의 후견인[입양특례법 제18조]
-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입양특례법 제19조]

Ⅲ. 입양의 요건

1. 양자가 될 자격[입양특례법 제9조]

-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아동
- 실무상으로는 입양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는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함

2. 양친이 될 자격[입양특례법 제10조,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
-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이란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

3. 친생부모의 동의 등[입양특례법 제12조, 제13조]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져야 함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IV. 입양특례법 사건의 심리

1.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가. 아동에 관한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및 아동카드

나. 양친이 될 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양친이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 그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 현재의 국적에 관한 서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출생증명서]
-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수사경력조회 회보[실효된 형 포함]
- 양친 가정조사서
- 건강진단서[알코올이나 약물중독 여부에 관한 검사 포함] / 국내입양의 경우 양친이 될 자에 대한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특수상병 포함]
- 직업,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소명자료
- 양친이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입양의 동의에 관한 서류

- 친생부모 등의 입양동의서 및 상담확인서
-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친생부모에게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었거나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라. 기타

- 국내 입양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와 연계한 외국 입양기관의 허가증
-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 보건복지부장관 발행의 해외이주허가서

2. 기일 전 조사

가. 제출서류의 검토

- 양친 가정조사서 관련 검토
- 사후 감독보고서

나. 관계자의 의견청취 (별지 1)

-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후견인,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등에 대하여 ① 현재도 입양에 동의하는 것인지 여부, ②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이 내려질 경우 심판을 고지받기를 원하는지 여부, ③ 그 고지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요청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

다. 사실조회 (별지 2)

- 국내입양 사건의 경우 입양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 국내입양 사건의 경우 가사소송법 제45조의9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추가 사실조회

라. 심리검사 촉탁

- 국내입양 사건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심리검사를 촉탁
- 국외입양 사건의 경우 심리평가보고서를 해당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과 함께 제출받음

마. 조사관 조사 (별지 3)

- 국내입양 사건의 경우 2018년부터 양부모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건에 대하여 조사절차를 거치고 있음
-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의 경우 양친이 되려는 사람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가사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양친의 주거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제출받거나 양친과의 이메일 교환이나 음성·영상을 통한 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바. 조정조치

- 심리검사결과, 가사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조치
-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입양 전담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상담 실시

3. 심문기일

-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심문기일 지정

4. 심판 (판단기준)

-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함[입양특례법 제11조 제2항]

5. 입양의 효과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입양특례법 제14조]
- 가정법원의 입양심판 확정으로 효력 발생

V. 기타

1. 체험위탁(사전위탁)

- 국내입양 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 이전에 입양기관이 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으로 입양청구인들을 지정한 후 아동을 먼저 인도하는 관행이 있음
- 법원의 결정 이전에 사실상 양육이 개시되어 판단에 제약을 줄 우려가 있으나, 아동을 조기에 인도함으로써 입양가정을 빨리 안정시킬 수 있고, 실제 양육태도 등을 입양허가심판에 참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2.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 입양협약)

- 우리나라는 2013. 5. 24. 헤이그 입양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민법상 입양

[미성년자 입양]

I. 청구권자 및 관할 등

1. 청구권자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성인자[민법 제866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민법 제874조 제1항]
- 다만, 배우자의 전혼(前婚)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 단독 청구할 수 있음(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 또는 친모인 배우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음)

2. 양자가 될 사람: 미성년자

3. 관할: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호]

II. 심리

1. 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정명령

가. 기본서류

1) 인적사항 관련

-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청구인 배우자가 사건본인의 친부나 친모인 경우) 청구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2) 승낙 및 동의 관련

- 양자가 될 사람(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 사건본인의 입양승낙서(법정대리인 동의요) 및 자필진술서[민법 제869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제1항 유추적용]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민법 제869조 제2항]

- 친생부모의 동의서[민법 제870조 제1항]
- 부모 이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

3) 양육자 적합성 관련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실조회 실시)
- 신용정보조회서 및 직업, 소득, 재산에 관한 소명자료
- 양육계획진술서(교육에 대한 내용 포함)
- 기본적인 양육환경 및 유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나. 추가보정

- 청구인 진술서(입양의 동기, 현재 양육상황·양육능력 등)
- 친생부모 진술서(청구인 배우자가 사건본인의 친부나 친모인 경우 / 친생부모가 제3자들에게 입양 보내는 경우)
- 청구인의 전혼 소생 친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그 친자녀의 이 사건 입양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자필진술서
- 그 밖에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안정성,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유대관계, 청구인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재산상태 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 입양부모교육[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

2. 조사관 조사, 조정조치, 심리검사 촉탁, 심문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실시

3. 친생부모의 동의 혹은 그에 갈음하는 사유 확인

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민법 제870조 제1항 단서 제2호 친권상실, 제3호 소재불명 등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나. 친생부모에 대한 의견청취

-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의견청취서를 송달함[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제1항 유추적용]
-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친생부모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여러 명일 때에는 연장자)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실시함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제2항 유추적용]

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

- 민법 제87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3년 이상 부양의무 미이행,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소명이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함

4. 심판 (판단기준)

-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함[민법 제867조 제2항]

5. 입양의 효과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민법 제882조의2]
-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
- 입양허가심판만으로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가 입양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민법 제878조]

[친양자 입양]

I. 청구권자 및 관할 등

1. 청구권자

- 미성년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성년자로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함[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 다만, 부부 중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 청구 가능하고,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족함[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2. **친양자가 될 사람:** 미성년자

3. **관할:**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호]

II. 심리

1. **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정명령**

- 친양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미성년자 입양 규정을 준용함[민법 제908조의8]
- 기본서류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입양과 동일하나, 승낙서와 동의서는 친양자 입양에 동의 내지 승낙한다는 뜻, 즉 **종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입양에 동의 내지 승낙한다는 뜻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되어야 함(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서류 미비시 보정명령, 추가 소명자료 요구, 입양부모교육

2. **조사관 조사, 조정조치, 심리검사 촉탁, 심문**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실시(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입양 전의 가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양자가 될 미성년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 친생부모의 의사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음)

3. **친생부모의 동의 혹은 그에 갈음하는 사유 확인**

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친권상실 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그 소명자료 제출

나. **친생부모에 대한 의견청취**

-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의견청취서를 송달함[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제1항]
-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친생부모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여러 명일 때에는 연장자)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실시해야 함[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제2항]

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

-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의 사유(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 미이행 및 면접교섭 미실시,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소명이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함

4. 심판 (판단기준)

- 미성년자 입양과 동일[민법 제908조의2 제3항]

5. 입양의 효과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함[민법 제908조의3]
- 친양자의 성과 본은 자동적으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됨
-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심판 확정으로 효력 발생

IV. 사건 유형별 검토(미성년자 입양에도 동일하게 적용)

1.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 소생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가. 미성년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 나. 기본서류는 동일하되, 아래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명함(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승낙서 및 동의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함)
 - 청구인 배우자(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출입국사실 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소변동내역 기재된 것)
 - 사건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미입국한 경우 여권사본)
 - 외국 거주 중인 친생부 또는 모의 송달가능한 국내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신고서와 번역문 공증 필요)

- 친생부모의 이혼판결문
- 사건본인의 현재 주소지, 출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베트남: 호적부, 출생증명서 등
 - 중국: 친자관계공증서(번역문과 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호구부, 출생증명서, 전가족상주인구등기표 등

다. 필요한 경우 추가 보정 및 가사조사 등 진행(특히 혼인관계의 안정성, 사건본인과의 유대관계 등 집중심리)

라. 관할: 사건본인이 미입국한 경우 서울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제13조 제2항]

마. 국적취득의 우회 수단으로 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심리

2. 외국인 배우자의 친족을 입양하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친인척(조카 등)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는데, 양자가 될 사람이 외국인 배우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하지는 않고, 국적취득의 우회 수단으로 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히 심리
- 준거법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는 대한민국 민법이, 외국인 배우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이 각각 적용됨에 유의[국제사법 제43조]

3. 국적 취득 등을 위하여 한국인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유학비용 경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국외에서 거주 중인 자가 한국인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그 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
- 입양제도의 취지와 이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함이 타당
- 양친이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함에 유의 [국제사법 제43조]

4. 외국법원의 입양판결을 이미 받은 경우

- 한국인 양친이 외국에서 외국인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판결을 받고 난 후 우리나라 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음

-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입양허가제가 시행된 2013. 7. 1. 이후부터 외국 입양판결을 첨부한 입양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입양관계를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입양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단상

1. 입양신청절차 및 결연절차 통합에 따른 국내입양 확대 기대

- 입양기관별 신청·결연에 따른 불균형 문제
- 불균형 시정에 따른 국내입양 확대 기대

2. 법원의 임시양육결정

- 임시위탁(체험위탁)에 대한 가정법원의 기존 시각
- 임시양육의 유용성
- 법원의 업무부담 내지 절차지연에 대한 우려

3. 국제입양법 적용의 한계와 추가적 검토 사항

- 민법상 입양의 현황
- 국제입양법 적용 범위의 문제
-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 문제

[별지 1]

서울가정법원

의견요청서

귀하의 자녀 ○○○에 대한 입양허가 청구서가 20 . . . 우리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사건번호 2020느단).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아래 사항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을 기재한 후 우리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 귀하의 법정대리인(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도 함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아래 -

1. 귀하는 현재도 귀하의 자녀에 대한 입양에 동의하십니까?

(귀하 : 예 아니오)

(귀하의 법정대리인 : 예 아니오)

2. 귀하는 이 사건 입양허가청구를 허가하는 심판이 내려질 경우 심판을 고지받기를 원하십니까?

(귀하 : 예 아니오)

(귀하의 법정대리인 : 예 아니오)

3. 위 2.항에 ‘예’로 표기하신 경우 그 고지방법(우편 또는 전화)과 고지장소(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1) 귀하에 대한 고지방법 및 고지장소(또는 전화번호)

우편□(주소:) 전화□()

(2) 귀하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방법 및 고지장소(또는 전화번호)

우편□(주소:) 전화□()

4. 기타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첨부서류-

-귀하의 인감증명서 및 귀하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

20 . . .

판사 □□□ ㉠

[별지 2]

서울가정법원

사실조회

OO아동복지회 귀하

사 건 2020년 단 입양특례법의 입양허가(국내)

청 구 인 1.

2.

사 건 본 인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여 아래의 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사항

1. 사건본인이 현재 어디에서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인들이 이미 사건본인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다면,
 - 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사진을 회신하여 주시되,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의 가정에 도착한 날짜, 청구인들과의 애착관계 형성 정도, 수면 내지 식사의 적응 정도 및 습관,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청구인들이 작성한 양육일지 등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지 않다면,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면접한 경과 등 청구인들이 사건본인과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사진, 일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건본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청구 이후 업데이트된 내용(치료내용이나 상황 등)이 있다면 함께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청구인들에게 종전에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입양 사후 감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판 사 □ □ □ ㉠

[별지3]

서울가정법원 조사명령

사 건 2020년 단 입양특례법의 입양허가(국내)

- 청 구 인 1.
2.

사건본인

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사항

1. 기본조사 및 자료 수집
2. 청구인들이 양부모로서 적합한지 여부(가족관계, 입양동기, 양육계획, 양육철학, 입양준비 과정, 사건본인과의 애착관계 형성 정도, 공개 입양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입장, 가까운 친지들의 입양에 관한 생각, 청구인들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경제적 상황, 심리적 안정성, 부부 사이가 원만한지 등)에 관한 사항
3. 청구인들의 입양에 대한 의사(가급적 청구인들을 분리하여 의견을 물어볼 것)
4. 양육환경에 대한 조사(필요시 청구인들의 주거지에 대한 출장조사, 청구인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의견청취와 양육상황 파악 포함)
5. 사건본인을 현재 위탁양육하고 있다면 사건본인의 상태(건강 등 발육상황 포함), 애착관계 형성 정도 및 양육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6. 기타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0 . . .

판 사 □ □ □ 인

국제입양법에 따른 가족 내 국제입양 절차 이행

이 종 혁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입양법에 따른 가족 내 국제입양 절차 이행

— 국제사법적 고려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

이종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서론

- 제21대 국회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입양법”)을 제정하였음. 국제입양법은 2023. 6.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3. 7. 18.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 7. 18.부터 시행될 예정임. 국제입양법과 동시에 「입양특례법」을 전부개정하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내입양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입양을 규율하는 것으로 하고, 국제입양법은 국제입양을 규율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이원적으로 규율할 예정임. 정부는 국내입양법 및 국제입양법의 시행과 동시에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이하 “헤이그 입양협약”)을 비준할 계획임. 국제입양법은 헤이그 입양협약의 이행법률로서, 헤이그 입양협약의 체약국과의 사이에서의 국제입양을 규율할 뿐만 아니라, 비체약국과의 사이에서의 국제입양도 규율할 것임.
- 종래 ‘가족 내 국제입양’은 중도입국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근자에는 친척(예컨대 조카)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예컨대 고향의 이웃의 자녀 또는 고아)을 입양하는 경우와 같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와 친척 등을 입양하는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이하에서 전자는 ‘친족입양’이라고 지칭하고 후자는 ‘계자입양’이라고 지칭함. 양자를 통칭하는 경우 ‘가족 내 입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II. 한국의 가족 내 국제입양의 법적 체계와 실무

1. 개 관

□ 헤이그 입양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권리가 존중되도록 통일적 절차를 확립하고 체약국들 간에 유연한 공조체제를 확립하며 헤이그 입양협약에 따라 행하여진 입양이 체약국들에서 승인되도록 보장함(제1조). 국제입양법은 헤이그 입양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입양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외국으로의 입양

-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상거소지국(입양국)의 중앙당국에 입양신청
- ② 입양국의 중앙당국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보고서 작성
- ③ 출신국 중앙당국(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 국제입양법 제5조)으로 보고서 송부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국제입양법 제9조 제1항)
- ⑤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춘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국제입양법 제10조)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 중앙당국에 아동에 관한 국제입양아동보고서(국제입양법 제7조 제2항 후단),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동법 제8조), 결연에 관한 정보(동법 제10조)를 각 송부(동법 제11조 제1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 확인(동법 제11조 제2항)
- ⑦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국제입양법 제12조)
- ⑧ 아동의 인도(국제입양법 제15조), 사후서비스 제공(동법 제16조)

○ 국내로의 입양

-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신청(국제입양법 제20조 제1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의 양부모가 될 자격(국제입양법 제19조, 국내입양법 제18조)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국제입양법 제20조 제2항)
- ③ 양부모가 될 자격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자의 정보를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국제입양법 제20조 제4항)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수령하면 양부모가 될 자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국제입양법 제21조 제1항)

- ⑤ 출신국에서 입양 성립 및 국내에서의 효력발생(국제입양법 제22조)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이 입국하여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따른 입양의 효력발생(국제입양법 제23조)
- ⑥ 사후서비스 제공(국제입양법 제24조)

2. 국제입양법상 입양의 요건과 효력

□ 우리 가정법원이 입양재판을 하는 외국으로의 입양의 경우를 기준으로 국제입양법에 따른 입양의 요건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음.

□ 양자가 될 자격

- 외국으로 입양되어 양자가 될 아동은 ① 국제입양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 또는 ②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에 해당하여야 함.
 - 문제는 국제입양법 제7조 제2항 제2호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배우자의 친생자가 아닌 다른 친족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국제입양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중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아동을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국제입양아동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국제입양법 제7조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배우자 친생자 입양에 있어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함.

□ 양부모가 될 자격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본국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만, 국제입양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법 및 민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도 갖추어야 함(국제입양법 제9조 제1항).
 - 입양정책위원회가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의 경우에는 국내입양법 및 민법에 따른 요건도 구비할 것을 요구함. 이는 입양의 준거법인 양친의 본국법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이 누적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 범위에서 양친의 요건에 관한 국내입양법 및 민법 규정은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법규로 기능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음(국제입양법 제9조 제2항).
 - 배우자의 친생자가 아닌 다른 친족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입양법 제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하여야 함.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결연을 생략할 수 있음(국제입양법 제10조 제1항).
 - 배우자의 친생자가 아닌 다른 친족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연을 생략할 수 없음.
 - 국제입양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결연을 함에 있어서는 국제입양법 제3조에 따른 국제입양의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국제입양법 제10조 제2항).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입양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 단독입양의 경우로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민법상 일반입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본국법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67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본국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제12조 제1항).

□ 입양의 효력

-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다만, 국제입양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함(국제입양법 제13조).
-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함.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 또는 친양자입양 신고를 하여야 함(국제입양법 제14조 제1항).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국제입양법 제14조 제2항).

Ⅲ. 국제사법적 고려의 필요성

- 국제입양법 제6조가 국제사법의 우선 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국제입양 사건은 국제사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실무의 정립과 운영이 필요함.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협약과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사법」을 적용하고, 「국제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②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국제사법」과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 국제사법은 국제입양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재판관할규칙(2022. 7. 5. 시행)과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58조(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입양의 성립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양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② 양친자관계의 존부확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罷養)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57조(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자녀와 피고가 되는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입양의 성립에 관한 사건의 경우 ① 양자가 되려는 사람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또는 ②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국제사법 제58조 제1항). 헤이그 입양협약도 아동과 양친의 상거소지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함.

- 가족 내 국제입양의 경우 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중에 입양재판이 진행되는 예가 많음. 그러므로 국제사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할근거인 ‘양자가 되려는 사람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국제입양 사건에서 상거소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양친자관계의 존부확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의 경우 ① 자녀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또는 ② 자녀와 피고가 되는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인 경우 한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국제사법 제58조 제2항, 제57조).

- 제58조 제2항은 양친자관계의 존부확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사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57조를 준용함. 제57조는 친생자관계사건, 즉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① 자녀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② 자녀 및 피고가 되는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인 경우 한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함. 위 ②의 관할근거는 자녀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피고가 되는 양부 또는 양모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 위 ②의 국적관할을 피고라는 당사자의 역할과 결합한 태도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됨. 다만, 대개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므로 위 ①의 관할근거가 실무상으로는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사법은 국제입양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결정규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70조(입양 및 파양)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른다.
 제71조(동의)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녀의 본국법**이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 우리 국제사법은 입양에 관한 법률관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일률적으로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규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결시점도 입양과 파양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입양 당시’로 고정하고 있음.

○ 입양의 요건, 성립, 효력 등이 입양의 준거법인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여 규율됨. 입양의 성립은 계약형 입양 또는 재판형 입양의 문제를 포함함.

- 재판형 입양제도를 채택한 영미법계 국가는 국제입양 사건에 대하여 먼저 어느 국가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자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반면에, 계약형 입양제도를 채택한 대륙법계 국가는 입양을 독자적인 법률관계로 파악하여 준거법을 판단함.

- 외국 법원 또는 관할당국에 의한 재판형 입양에 대하여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유추적용되고, 계약형 입양을 전제로 한 국제사법 제70조는 적용되지 않음. 외국의 입양판결은 성질상 비송사건에 속함.

○ 입양의 효력은 입양의 성립에 따른 직접적 법률효과인 양친자관계의 성립만을 의미함. 양친자간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인 국제사법 제72조에 의함. 입양의 효력에는 입양의 결과로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법률적 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즉 불완전입양(또는 단순입양, 비단절형 입양)(simple adoption) 또는 완전입양(또는 단절형 입양)(full adoption)의 문제가 포함됨.

- 우리 민법은 2008년 선고형 입양이자 완전입양인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양친은 친양자제도 또는 계약형 입양이자 불완전입양인 일반양자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친양자입양은 재판의 확정으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입양신고는 보고적 신고임.

○ 입양의 성립에 관하여 양친의 본국법만 적용하고 양자의 본국법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자녀의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71조는 인지, 준정, 입양 등 친자관계의 성립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일괄적인 동의규정을 두고 동의요건에 관한 한 자녀의 본국법을 누적적용한다고 규정함. 연결시점은 양친자관계의 성립 당시, 즉 입양 당시임.

□ 반정(反定)과 숨은 반정 — 영미법계 국가로의 입양의 특수성

○ 입양의 준거법의 경우 국제사법상 반정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 국제사법에서 말하는 반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어느 외국법을 지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이 법정지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국가에 따라 연결점이 서로 다르거나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을 달리하기 때문에 반정이 발생함.

○ 입양의 준거법으로 영미법계 국가의 법이 지정되는 경우 국제사법상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한국법으로 반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숨은 반정(hidden *renvoi*)이란 외국의 국제재판관할규칙에 숨겨져 있는 저축규칙에 의하여 한국법으로 반정하는 경우를 말함. 우리 판례는 이혼사건과 마찬가지로 입양사건도 미국법상 국제재판관할규칙에 근거한 숨은 반정을 허용함. 대법원은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 제22조를 유추적용하여 숨은 반정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음.

- 영미법계 국가의 국제재판관할규칙(주로 이혼, 입양)에는 저축규칙이 숨겨진 경우가 많음. 가령 영미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은 어느 경우에 자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만 규정하고,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자국법, 즉 정확히는 법정지 실질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데, 이와 같은 국제재판관할규칙에는 법원은 법정지법을 적용한다는 저촉규칙, 즉 법정지법이 준거법이라는 저촉규칙이 숨겨져 있다는 것임.

□ 국제적 강행법규의 고려

- 국제입양법에는 입양의 원칙적 준거법인 양친의 본국법이 외국법이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음. 양친의 자격요건과 양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들이 대표적임.
 - 국제적 강행법규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추가하여 준거법이 외국법이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강행규정을 말함. 이는 국내적 강행규정(통상의 강행규정 또는 단순한 강행규정)과 구별됨.

IV. 가족 내 국제입양 실무가이드의 구조

- 양자가 양부모 소재지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양자의 국제적인 이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이는 국제입양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외국으로의 입양’이나 ‘국내로의 입양’은 아님 (국제입양법 제2조 제6호 소정 ‘국제입양’ 정의 참조). 그러나 가족 내 국제입양의 경우 양자가 되려는 전혼자녀 또는 친족이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대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예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실무가이드의 ‘국내로의 입양’은 국제입양법상 ‘국내로의 입양’의 정의와 관계없이 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전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국제입양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섭외사건처럼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에 따라 입양의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 입양요건 심사를 위하여 입양의 준거법을 결정하고 그밖에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규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입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이 외국법(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일본법, 중국법)이더라도 양부모 자격에 관한 국내입양법 제18조가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국제입양법 제7조 제1항 제2호 외의 가족 내 국제입양의 경우 국제사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입양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음. 그 경우 국제적 강행법규의 지위에 있는 국제입양법 규정(특히 양부모 자격 요건)이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됨. 그런데 배우자의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국제입양법이 적용되므로, 오히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됨.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친양자입양’의 경우에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고, 그 외의 가족 내 국제입양의 경우 입양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면 우리 법보다 엄격하지 않은 요건에 따라 입양이 행하여질 수 있음.

- 위와 같은 귀결이 국제입양법이 의도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이 아닌 가족 내 국제입양의 경우에도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영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변칙적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국제입양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한국에서 외국 당사자가 관련된 가족 내 국제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양부모의 본국법과 상거소지, 양자의 본국법과 상거소지에 따라 국제입양의 유형을 분류해볼 수 있음.

제16조(본국법) ①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③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질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따른다.

- 본국법은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정하여짐. 다만, 국적 중 하나가 한국일 경우 한국법을 본국법으로 함(국제사법 제16조 제1항).
 -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양부모 또는 양자의 경우 본국법이 항상 한국법으로 정하여짐에 유의하여야 함.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장기간 거주한 미국 및 한국 이중국적 재외동포의 경우 그 본국법은 한국법임.
 - 양부모의 본국법과 양자의 본국법을 국제입양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국제사법 제70조가 입양의 준거법을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양부모의 국적이 연결점으로 기능함), 국제사법 제71조가 양친자관계 성립을 위한 자녀 또는 제3자(예컨대 친생부모)의 승낙이나 동의 등의 요건의 준거법을 입양 당시 ‘양자의 본국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양자의 국적이 연결점으로 기능함).
- 당사자가 연방국가(국제사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 즉 불통일법국) 국적을 가질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준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따라 본국법을 결정하고, 그와 같은 준국제사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미국의 경우 주)의 법에 따라 본국법을 결정함(국제사법 제16조 제3항).
 - 미국은 국제사법 제16조 제3항 전단에 해당하지 않고 후단에 해당하는 국가이므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나 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의 법에 따라 본국법을 결정하여야 함. 이때 가장 밀접한 관련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현재 또는 과거의 상거소 또는 주소 소재지가

중요하게 고려됨. 그러므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나 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경우 그 사람의 본국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임.

□ 외국으로의 입양

- 외국으로의 입양은 양부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양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4가지 유형이 있음. 다만, 양부모와 양자의 본국법이 외국법인 3유형의 경우에는 외국법원에서 입양재판이 행하여질 가능성이 높으나, 한국법원에서 입양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논의의 완결성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에 포함시킴.
 - 1유형 : 본국법이 외국법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양부모가 본국법이 한국법이고 한국에 거주하는 전혼자녀 또는 친족을 입양하려는 경우
 - 2유형 : 본국법이 한국법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양부모가 본국법이 한국법이고 한국에 거주하는 전혼자녀 또는 친족을 입양하려는 경우
 - 3유형 : 본국법이 외국법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양부모가 본국법이 외국법이고 한국에 거주하는 전혼자녀 또는 친족을 입양하려는 경우
 - 4유형 : 본국법이 한국법이고 외국에 거주하는 양부모가 본국법이 외국법이고 한국에 거주하는 전혼자녀 또는 친족을 입양하려는 경우

□ 국내로의 입양

- 국내로의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4가지 유형이 있음. 이는 국제입양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국내로의 입양’이 아니라, 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미리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가족 내 국제입양의 현실을 고려한 분류임. 다만, 양부모와 양자의 본국법이 모두 외국법인 C유형의 경우에는 외국법원에서 입양재판이 행하여질 가능성이 높으나, 한국법원에서 입양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외국으로의 입양’에서와 마찬가지로 논의의 완결성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에 포함시킴.
 - A유형 : 양부모와 양자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본국법이 외국법인 양부모가 본국법이 한국법인 전혼자녀 또는 친족을 입양하려는 경우
 - B유형 : 양부모와 양자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본국법이 한국법인 양부모가 본국법이 한국법인 전혼자녀 또는 친족을 입양하려는 경우
 - C유형 : 양부모와 양자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본국법이 외국법인 양부모가 본국법이 외국법인 전혼자녀 또는 친족을 입양하려는 경우
 - D유형 : 양부모와 양자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본국법이 한국법인 양부모가 본국법이 외국법인 전혼자녀 또는 친족을 입양하려는 경우

□ 숨은 반정의 가능성 검토 필요성

- 양부모의 본국법이 캘리포니아주법인 경우 국제사법상 숨은 반정의 법리에 의하여 입양의 준거법으로 캘리포니아주법이 아니라 한국법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음.
- 우리 국제사법에 따라 입양의 준거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지정되더라도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근거가 한국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관할이 있으면 캘리포니아주 실질법을 적용하는 숨은 저촉규칙에 따라 한국법으로 반정함으로써(국제사법 제22조 제1항) 결과적으로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될 수 있음. 숨은 반정은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법리이므로 적법한 입양절차 운영을 위하여 숨은 반정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함.
-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9210조 (a)항에 따른 관할 근거를 기초로 한국법으로의 숨은 반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요건화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① (i) 미성년자가 입양절차 개시 직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한국에 거주하였을 것. 미성년자는 부모, 후견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였어야 함. 입양아동이 6개월 미만의 영아인 경우 출생 직후부터 한국에 거주하였으면 충분하고, 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한국을 이탈한 것은 무방함. 또한 (ii) 현재 또는 장래 해당 미성년자의 돌봄에 관한 상당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것.
 - ② (i)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입양절차 개시 직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한국에 거주하였고(일시적 이탈은 무방함), (ii) 현재 또는 장래 해당 미성년자의 돌봄에 관한 상당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
 - ③ (i) 미성년자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현재 한국에 소재하고, (ii) 미성년자가 유기되었거나, 학대 또는 학사의 대상이거나 그러한 위협을 받거나 기타 방치되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실무가이드상 유형 분류

- 이장에서 분류한 ‘외국으로의 입양’(1유형 내지 4유형)과 ‘국내로의 입양’(A유형 내지 D유형)은 우리 가정법원이 입양허가심판을 진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특히 국제입양법상 ‘국내로의 입양’의 정의와 관계없이 ‘국내로의 입양’의 유형을 분류함), 우리 국제사법 제70조가 입양의 준거법 결정을 위한 연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부모의 본국법’과 우리 국제사법 제71조가 양친자관계 성립을 위한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의 요건의 준거법 결정을 위한 연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자의 본국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족 내 국제입양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이중국 적자는 국제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본국법을 결정하여야 하고, 연방국가 등 불통일법국 국적자는

국제사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특정 주법을 본국법으로 결정하여야 함).

○ ‘외국으로의 입양’(1유형 내지 4유형)과 ‘국내로의 입양’(A유형 내지 D유형)을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여 실무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음. 이는 입양기관도 가정법원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실무를 운영함을 전제로 한 것임.

- ① 양부모의 본국법이 외국법이고 양자의 본국법이 한국법인 경우(1유형과 A유형)
- ② 양부모의 본국법이 한국법이고 양자의 본국법이 외국법인 경우(4유형과 D유형)
- ③ 양부모와 양자의 본국법이 모두 외국법인 경우(3유형과 C유형)
- ④ 양부모와 양자의 본국법이 모두 한국법인 경우(2유형과 B유형)

입양체계 개편과 향후계획

이 해 희 사무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체계 개편과 향후계획

이해희 사무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개편방향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책임 강화하여 국제규범(헤이그협약)과 절차를 준수하는 입양체계로 개편
- 입양전반을 국가의 업무로 규정하고, 민간기관에 일부 업무 위탁

□ 주요 개편내용

① 적용범위

- 국내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외(나가는 입양) 입양뿐 아니라 일반아동의 ‘국제입양(들어오는 입양 및 나가는 입양)’까지 규율
- 특히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민법, 입양특례법으로 이분화된 국제입양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통합
-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

	〈 현행 〉			⇒	〈 변경 〉		
	국내	국제			국내	국제	
		외국으로	국내로			외국으로	국내로
일반 아동	민법	민법		일반 아동	민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보호 아동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민법	보호 아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2] 입양대상 아동 결정 및 아동보호

- 지자체장이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원행)하고, 법원의 입양허가 전까지 책임지고 보호^(변경)

절차	기존	개정
① 친생부모 상담	입양기관	지자체 (‘21.6월 아동복지법 기 개정)
② 입양대상 아동 결정	보호자의 입양 동의	
③ 아동 보호	입양기관	지자체

3]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자격심의, 아동과의 결연

- 예비양부모 조사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 양부모 자격심의 및 아동과의 결연은 복지부에 입양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
 *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운영하고, 학계·의료·법률·입양 관련 전문가 등 50인으로 구성(위원장:장관, 사무국:보장원)

절차	기존	개정
① 입양신청	입양기관	복지부(보장원)
② 양부모 상담·조사·교육		복지부(위탁기관)
③ 양부모 자격(적격성) 심의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④ 아동-양부모 결연		

4] 임시양육 결정 및 입양 허가

- 법원에서 입양허가(12년~) 전 직권 또는 양부모의 신청으로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을 결정하는 제도를 신설
 * 아이와 양부모의 상호애착 형성 및 조기 적응 유도, 양육상황 모니터링 등 실시

5 입양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 입양 성립 후 최소 1년간 양부모와 양자의 정기적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아동적응보고서 작성,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국제입양의 경우 입양 성립 후 해외 중앙당국과 협력해 국적취득 여부, 아동 적응보고서 수령·확인^(외국으로 입양), 작성·송부^(국내로의 입양), 국외로의 입양 취소 시 보호조치 의무화
-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지자체 등에서 보관 중인 기록물(25만여건)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공적으로 관리, 정보공개 일원화

절차	기존	개정
사후관리	입양기관	복지부 (위탁기관)
정보공개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6 사회복지법인 등에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입양 신청,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보호대상 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입양인식 개선·양부모 교육·홍보 강화

8 국제입양 시 국가 간 상호 보증절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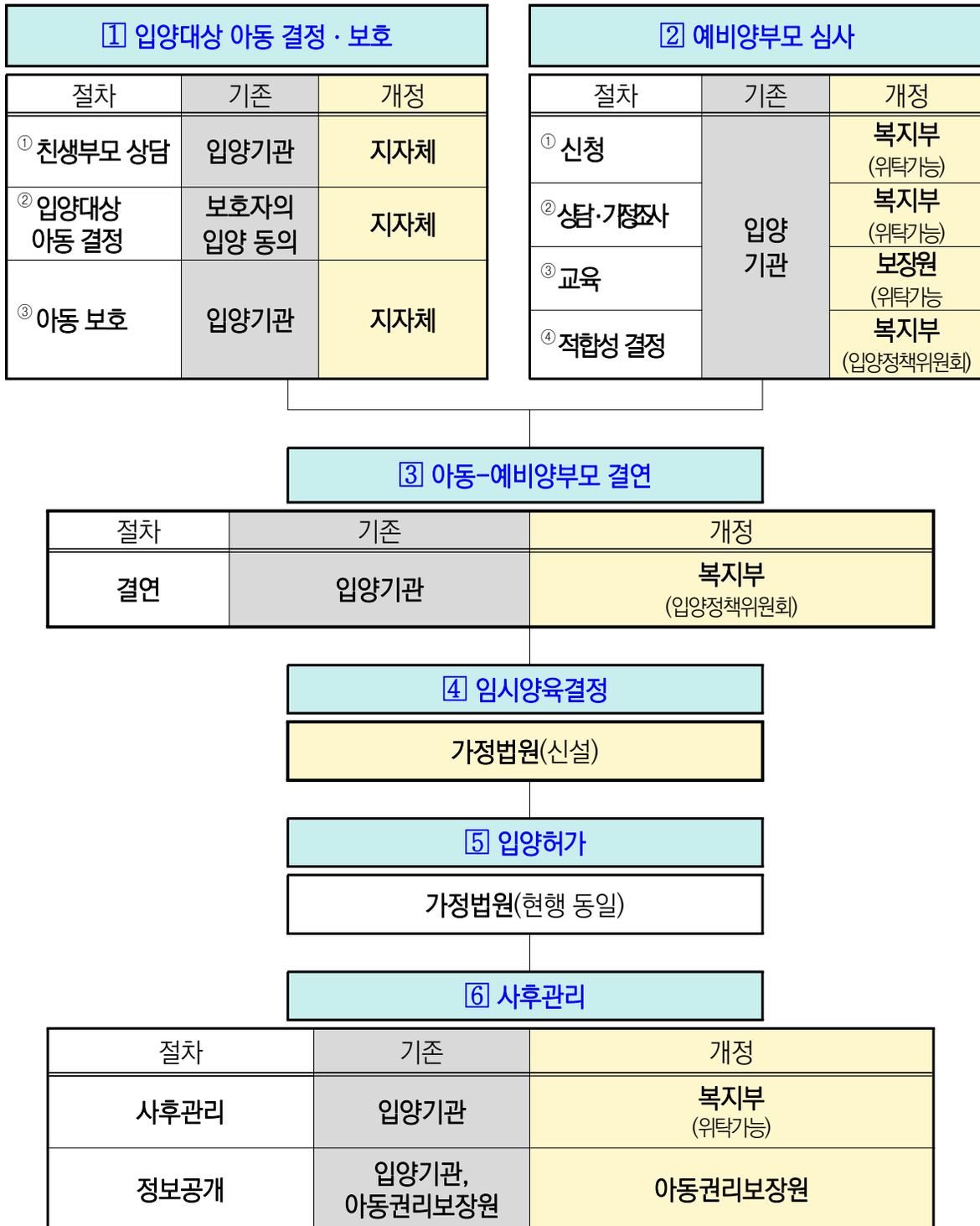
- 복지부를 국제입양 중앙당국으로 지정, 해외 중앙당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 출신국 가정법원에서 허가한 국제입양 효력 상호인정

*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출신국)에서는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입양국)에서는 양부모의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상호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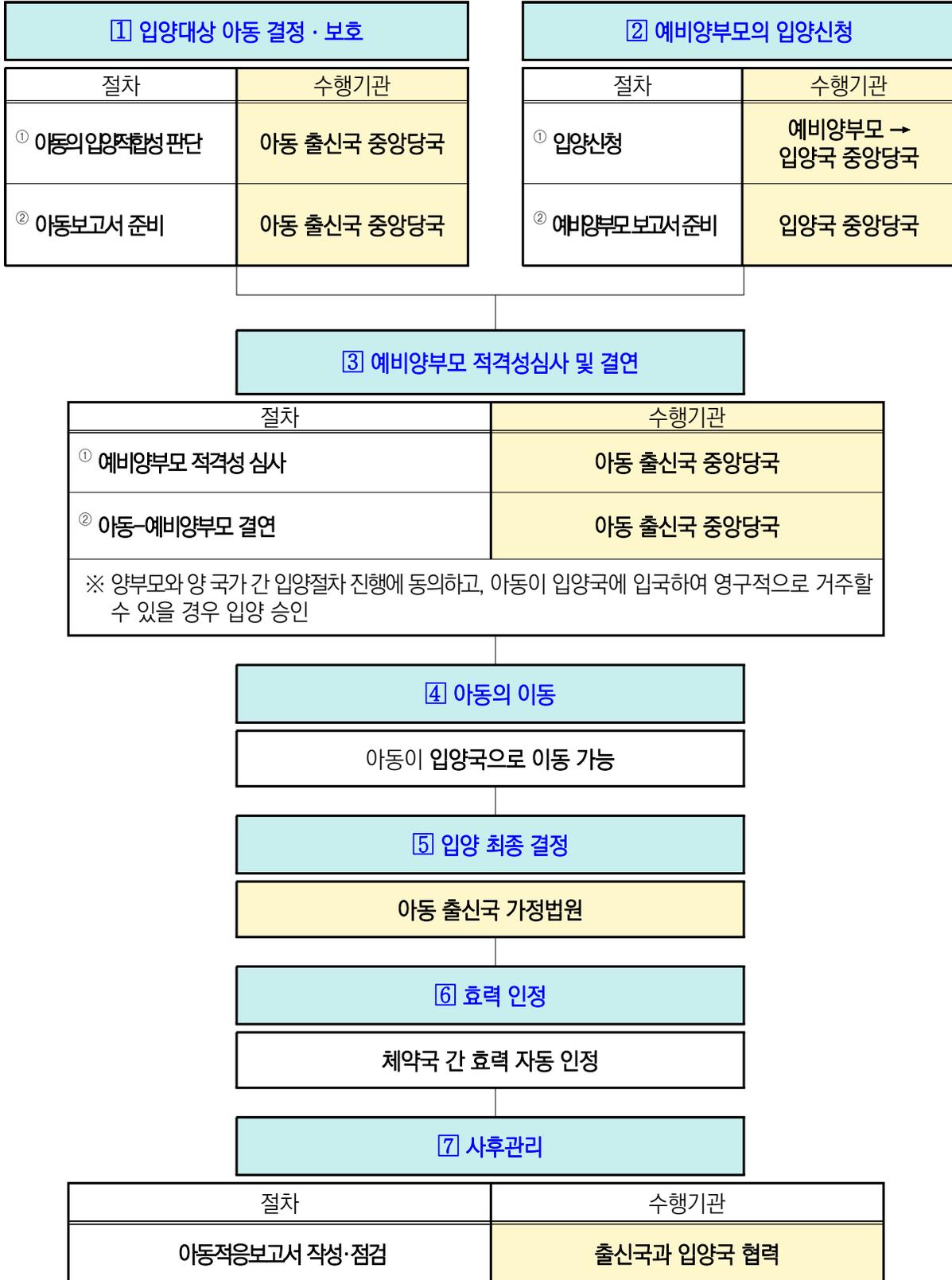
참고

입양절차 변화

□ 국내입양절차 변화



□ 국제입양절차 변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한 「거주(F-2)」 자격

장 주 섭 주무관

법무부 이민통합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한 「거주(F-2)」 자격

장주섭 주무관(법무부 이민통합과)

I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4. 거주(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II | 사증 발급

○ 대상자: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외국국적 미성년 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입양된 사람
- ◇ 한국인 부(父)에 의해 인지된 미성년 외국인 자녀
 -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외국국적 미성년 자녀를 한국인 배우자가 입양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는 방문동거(F-1)자격 대상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초청장
 - ③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양관련 서류 등)
 - ④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⑤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 ⑥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발급되는 사증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거주(F-2-2) 단수사증

Ⅲ 체류자격 변경

○ 대상자: 재외공관에서 거주(F-2) 체류자격을 발급받지 않고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외국국적 미성년 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입양된 사람
- ◇ 한국인 부(父)에 의해 인지된 미성년 외국인 자녀

○ 첨부서류

- ①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양관련 서류 등)
- ③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④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 ⑤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체류자격 : 성년이 되기 전까지 거주(F-2-2)자격으로 체류

국제결혼 가정의 미성년자입양 허가 신청 사건 가사조사 사례

송 현 종 조사사무관

서울가정법원

국제결혼 가정의 미성년자입양 허가 신청 사건 가사조사 사례

송현중 조사사무관(서울가정법원)

1 사례 개요

가. 사건 개요

- 청구인은 한국 국적 남성으로 이혼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사건본인(입양신청 대상 자녀) 친모와 결혼.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나이가 23세 차이가 남.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 사이에 현재 5세의 남아가 있음
- 사건본인은 12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베트남에서 출생했고 출생 1년 후에 당시 20세 정도였던 사건본인 부모가 이혼했고 친모와 외조부모가 양육했음. 사건본인 친부를 1년에 1~2회 만나고 있었음. 사건본인 5세 때 사건본인 친모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청구인과 결혼하면서 사건본인은 베트남에 외조부모가 양육했음. 사건본인 모는 청구인과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며 사건본인 외조부모에게 생활비와 사건본인 양육비를 송금했음. 사건본인 모는 7년 전에 입국해서 자녀가 출생하고 5년 동안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친정 부모에게 송금하기 위해 생산직으로 일하며 바쁘게 지냈음. 사건본인 모는 3년 전부터 1년에 1회 정도 베트남에 가서 사건본인을 만나고 들어왔음.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결혼 당시에 잠깐 만났고 베트남에 가서 1~2회 만나고 들어왔었음.
- 사건본인 외조부가 갑자기 사망했고 외조모도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임. 사건본인 커가면서 친모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음. 친모는 사건본인을 한국에 데려와 달라고 청구인에게 계속 요구했으나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 이러한 문제로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는 갈등했고 결혼 위기 상황에 이르기도 했음. 청구인은 외조모의 건강이 악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요구까지 하는 사건본인 모를 달래기 위해 사건본인 미성년자입양을 신청했음. 사건본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야 입양허가를 받기 쉽다는 말을 듣고 사건본인을 한국에 데려왔음. 사건본인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청구인 모가 통역해야 사건본인과 청구인이 의사소통할 수 있었음

나. 조사 과정

- 청구인이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신청한 후에 조사관에게 조사 명령이 내려짐. 위에 설명한 사항은 조사관이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와 면접을 통해 파악한 사항이었고 신청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와 결혼할 사실, 사건본인이 입국하여 청구인·사건본인 모·청구인과 사건본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함께 생활한다는 사실, 미성년자입양을 청구한다는 사실만 간략히 기재됨.
- 위에 내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와 면접을 통해 확인한 사항임.
- 가사조사관은 청구인, 사건본인 모·사건본인을 1회 면접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파악했음. 사건본인이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해 사건본인 모가 통역했으나 사건본인 모도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했음.
- 청구인의 입양 동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다문화가정 부모입양 교육 수강 후 다시 면접함. 청구인은 실제 사건본인 모의 요구로 미성년자녀 입양을 신청했고 둘 사이의 자녀가 있는데 사건본인 모가 이혼요구까지 하여 미성년자녀를 입양했다고 말함. 하지만 실제 사건본인을 베트남에서 양육할 수 없는 상황도 인정한다며 매우 고민스럽다고 함. 사건본인으로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의 결혼생활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어려움도 토로하며 혼란스러워함.
- 사건본인은 친모와 한국에서 생활한다는 기대와 함께 낯설고 친모 이외에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등 어려움이 보였으나, 친모와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잘 지낼 수 있다는 말한 반복함

2 | 입양사건에서 가사조사 경험

- 실제 국제입양의 성격을 가진 이러한 국제결혼 가정의 미성년자 입양사건을 입양사건의 특성, 재혼가정(step family)의 특성, 다문화가정의 특성 등 매우 복합적 성격을 지님
- 주로 한국남성인 청구인은 결혼생활과 사건본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위해 입양을 결심하는 동기가 있음
- 또한 한국에 갑자기 입양한 사건본인은 낯선 한국생활의 적응,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구인과 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도 함께 있음
- 사건본인 모 이외에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 사건본인의 국내 적응의 문제, 청구인의 입양 동기 등 사이에서 사건본인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임
- 최근 처음부터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고 이후 자료를 보정하지 못하는 사례도 자주 발견함

국제입양 절차에서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서비스

김영희 원장

현 굿프렌즈평생교육원, 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국제입양 절차에서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서비스

김영희 원장(현 굿프렌즈평생교육원, 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019년 헤이그입양협약 이행 관련 외국 아동의 한국 입양 체계 내 실무 준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후 3년 만에 또다시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2023년 7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국제입양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두 달에 한 번 정도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문화 민법 입양을 신청한 부모님들을 교육을 통해 꾸준히 만나왔다. 먼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많았다. 까다로운 입양 절차를 마치고 한 가족이 되어 지내는 입양 아동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중랑구가족센터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국제입양 가정의 상담을 많이 했었다. 경찰서로부터 의뢰되어 상담을 진행한 적도 있었다. 양부를 입양아동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여 상담이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입양아동이 집을 나가고 싶어 한다는 고민을 이야기하는 가정도 있었고, 성인이 되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입양아동도 만났다.

입양가정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고 여러 이유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을 진행했던 가정들의 문제를 요약해 보면,

첫째, 한국인 부모와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였다. 나이가 15세 이상인 입양아동의 경우 한국인 양부모 뿐만 아니라 친부모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

부모는 입양자녀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이지만 입양자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제대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입양자녀의 습관적인 행동을 하루 아침에 바꾸려고 하니 처음에는 관심이었던 부모의 말이 점점 견디기 어려운 간섭과 지나친 요구로 변질되어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였다.

둘째, 입양절차에 들어간 비용 문제였다. 만만치 않은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로 부모가 먼저 다투게 되고 그로 인해 가족 전체의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 원활한 입양절차를 위해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온전히 입양부모님의 몫이었다. 그러다 보니 친부모가 전적으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인양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의

소재가 되는 것이다.

셋째, 입양자녀의 한국 적응 문제이다. 15세 이상의 나이에 한국에 온 자녀들은 친구 관계를 새롭게 만들기도 어렵고 나이에 맞게 진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많았다. 입양자녀들이 진학을 나이에 맞게 해야 하는데 부모님들의 걱정으로 인하여 학년을 낮춰 진학을 할 경우 더 적응이 쉽지 않다. 입양자녀들은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도 벽찬데 주변 관계마저 맺기 어려우니 날카롭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구성원과의 소통 뿐만 아니라 부모와도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사례발표를 의뢰받고 상담을 했던 가정의 인터뷰가 아닌 입양으로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가정을 만나고 싶어 따로 수소문하여 두 가정의 부모와 입양자녀를 만나 보았다.

첫 번째 사례 : 친부인 줄 알고 있어요

3살 때 한국으로 입양을 온 자녀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호영(가명)은 한국인 양부가 친부인 줄 알고 있다. 부모님들이 호영을 베트남에서 살 때 낳았고 그래서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어 입양을 해야 했다고 호영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호영이는 양부를 친부로 믿고 있다. 호영이는 베트남어를 할 줄 모른다. 한국어가 모국어이다.

방문을 했을 때도 양부가 큰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고 입양자녀에게 친부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였다.

“입양 말하기” 이슈가 있는 가정이었다.

입양부모님은 입양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다. 먼저 입양자녀의 베트남 국적 포기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였다. 입양자녀의 국적에 관해 사인을 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입양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국적포기를 해야 하므로 입양 결정 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두 번째는 입양진행비였다. 결국 국적포기를 위해 아내가 직접 베트남에 들어가 사인을 한 사람을 찾아야 했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거의 1,0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였다.

양부는 전처와의 이혼에서 깊은 상처가 있고 현재 전혼 자녀는 만나지 못하고 있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였고 자녀를 낳기 전에 먼저 입양을 진행한 것이라고 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입양자녀의 동생 딸이 태어났고 두 자녀 사이는 좋았다.

마지막으로 양부는 입양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어 힘들었다고 하였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소개한 행정사를 만나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사례 : 다섯 딸과 함께 오순도순

양부의 전혼 자녀 2명과 친모의 전혼 자녀 2명과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딸, 이렇게 양부모님은 다섯 딸과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입양은 2번 진행하였다. 아내가 전남편과 헤어지면서 두 딸을 나눠 키우게 되었고 아내가 키우던 둘째 딸은 8년 전, 6살 때 입양을 진행하였고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다. 첫째 딸은 전남편이 키우고 있었고 학교를 다 마치면 입양을 허락하겠다고 하여 지금에야 입양을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 첫째딸도 입양절차는 다 끝나고 국적만 취득하면 된다. 이 가정에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정리를 해 보면 첫째 입양자녀의 교육 문제였다.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기에 어려웠다. 베트남에서 받은 졸업장이 있는데도 일반 고등학교에는 진학할 수 없어 다솜관광고등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입학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니 아직 한국말이 서툰 딸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이 더 많다는 것이다.

둘째 입양진행이 끝난 셋째(첫째) 딸의 국적취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14세 이상이라 국적취득을 하려면 시험도 봐야 하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입양을 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인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지만 국적취득은 안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14세 이상이어도 어렵지 않게 국적취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셋째 입양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다. 두 번 다 400만원씩 비용을 지불하였고 베트남을 오가는 비용까지 하면 1,000만원이 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입양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족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국제입양 절차에 드는 비용이다. 입양신청시 필요한 서류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굳이 절차를 도와주는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없게 되고 그 비용을 양부모님들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입양자녀들이 쉽게 지역사회 내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양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고 입양자녀들도 어려움 없이 한국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가족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내로의 입양부모교육

장 화 정 본부장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내로의 입양부모교육

장화정 본부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다문화 가정 입양가정 교육의 시작

현재 우리나라는 민법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 및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심판에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법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과 함께 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운영했고,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전국 14개의 법원에서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 1-1 '22-'23년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참여 현황]

2022년		2023년(10월말 기준)	
내국인가정(명)	다문화가정(명)	내국인가정(명)	다문화가정(명)
523	194	658	251

다문화 가정 입양부모교육 사례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중 국내로의 입양가정으로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입양부모 교육의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법원 교육 후 소감

“현장에서 교육을 들었지만 필요할 때마다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에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있는 동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 베트남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법원 통역지원이 안되어 교육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통역지원과 교육시간을 더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국

위와 같이 다문화 가정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모든 국가대상으로 통역지원을 할 수 없어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족문화와 생활습관들이 많이 달라 가족관계와 한국에서의 적응 및 생활 등을 다루기에는 현재의 교육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양부모의 자격 -

현재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만 입양부모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1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의하면 국내로의 입양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5.7.19.)이 되면 국내로의 입양을 신청하는 모든 가정이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입양법에 의거한 국내로의 입양 신청가정 수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진행하는 법원은 국내외입양, 일반입양 혹은 친양자 입양 등 사건명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향후, 다문화 가정의 전체 입양 신청 사건의 별도 통계와 변경된 절차를 안내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내로의 입양에 대한 입양부모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원활한 교육운동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담당기관 등의 다각적인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입양법에 따른 양부모 교육 준비

법 제정에 따라 2025년 7월 19일 이후부터는 국내로의 입양에 대한 모든 절차를 새롭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아동권리보장원 교육 사이트를 통해 교육접수부터 교육운영 후 관리까지의 절차를 기초로 하여 국내로의 입양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준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교육 신청 청구 일원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관련한 모든 신청과 절차가 한곳에서 진행된다면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나라별 자막(10개 국어) 영상교육도 수강할 수 있어 교육 접근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스템 개선)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을 통해 교육수강 외 입양 관련 행정 양식 등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교육이수 후 원활하고 신속한 국내로의 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원 및 가족센터와의 코웁(Co-work)) 지역자원 중 하나인 가족센터 및 법원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입양 행정절차까지 보완할 수 있다면 국내로의 입양에 대한 과정과 교육 안내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기존보다 안정되고 체계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내·외 입양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헤이그입양협약 정신을 준수하면서 국내로의 입양가정의 교육절차를 잘 마련하여 모든 입양아동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6회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주최·주관 |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

 보건복지부

 아동의 행복한 세상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